

#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6월 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1)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‘민간위탁 심의위원회’ 위원 자격요건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등을 통한 민간위탁의 투명성·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2) 상위법령 및 타 시·군 조례 용어 등의 통일성 확보 및 재위탁·재계약 모두 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범위 설정(안 제10조제3항)
- 2)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(안 제11조제4항)
- 3) 위원의 해촉 요건 추가(안 제11조의2)
- 4)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(안 제11조의3)

- 5) 상위 조례 및 타 시·군 조례와의 용어 통일성 확보(안 제2조제5호 외)  
가) “재협약”을 “재계약”으로, “협약”을 “계약”으로 변경
- 6) 충돌 규정(제11조와 제12조의2) 해소를 위해 재위탁·재계약 모두 심의  
대상에 포함(안 제11조제1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- 본 조례안은  
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맞추어  
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
-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명확히 하고,  
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  
‘재협약의 경우 선정 심의를 제외한다’는 문구를 삭제하여  
재위탁·재계약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시킴.
- 검토결과,  
민간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문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 
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,  
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